

제9조(산학실습 협약의 해지)

- ① '갑'과 '을'은 산학실습기간 동안에 협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약해지일 7일전에 해지 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'갑'과 '을'은 '병'과 미리 협의한다.
- ② 협약 해지의 고시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료증명서)

'갑'은 산학실습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'을'에게 산학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.

제11조(기타)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'갑', '을', '병'이 기명 날인 한 후 '갑', '병'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 년 월 일

갑(기업·기관)

- 주 소 :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74번지
- 회사명 : (주)호텔인터불고 
- 대표이사 : 구 본 건 

을(실습생)

학과(전공)	주 소	성명 및 날인(서명)
		(인)

병(대학교) : 대학(교) 총장 (직인)

※ '갑'과 '병' (기업·기관)의 직인란에는 반드시 직인 또는 법인도장을 사용하여야 함
※ '을'(실습생)란이 부족하면 추가해서 사용